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55

발의연월일: 2024. 6. 26.

발 의 자:김희정·박준태·박성민

김상욱 • 이종배 • 강대식

이인선 · 성일종 · 엄태영

김태호 · 김기현 · 김도읍

김예지 • 권영진 • 박정하

서범수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료를 받을 시에 비급여 진료비용은 보훈병원에서만 지원이 가능하고,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지원이 없어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곳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진료를 받음에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진료비용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법률 제 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약제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 및 약제비용"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료지원) ① 참전유공자가	제7조(의료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			
치·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			
우 그 진료비용(<u>약제비용</u> 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		
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	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 및		
다.	약제비용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